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6 | 2024.03.11 (2024.03.04~03.1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04~03.10)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에는 대통령주재로 세차례의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바, <제16차 민생토론회(3/4)>에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제17차 민생토론회(3/5)>에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①청년생활 걱정해소, ②청년정책 기반 확대, ③체계적인 자산형성, ④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제18차 민생토론회(3/7)>에서는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 해운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원 이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집중해야 할 중점 아젠더에 관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해 온 <국회미래연구원>은 중장기 국가 성장 비전 ‘첨단 녹색 사회(High Tech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를 제시하였으며, 7대 아젠더는 ① AI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②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③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성 제고, ④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⑤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 ⑥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적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⑦ 지역균형발전 등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거주무기기간 및 해당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동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시·도·특별자치단체 소비자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상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김은희의원 대표발의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정부부처 합동) 6
-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정부부처 합동) 8
- 제1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정부부처 합동) ... 10
-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신규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발표안(문화체육관광부) 13
-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제시(국회미래연구원)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환경부) 1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0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4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공정거래위원회) 25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6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7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1인) 2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1인) 2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0인) 29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2인) .. 29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4인) 30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4인) 30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3인) 3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3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04~03.10) [바로가기](#)

- [소송] 수허가자의 기부채납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 [기업지배구조] 주주행동 플랫폼 시대 : 주주권 행사 혁신과 경영진의 대응 전략
- [통상관세]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집행(관세 회피 조사) 강화
-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적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드 ‘마크 곤잘레스’의 창작 도안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은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합동
(지방시대위원회)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2024-03-04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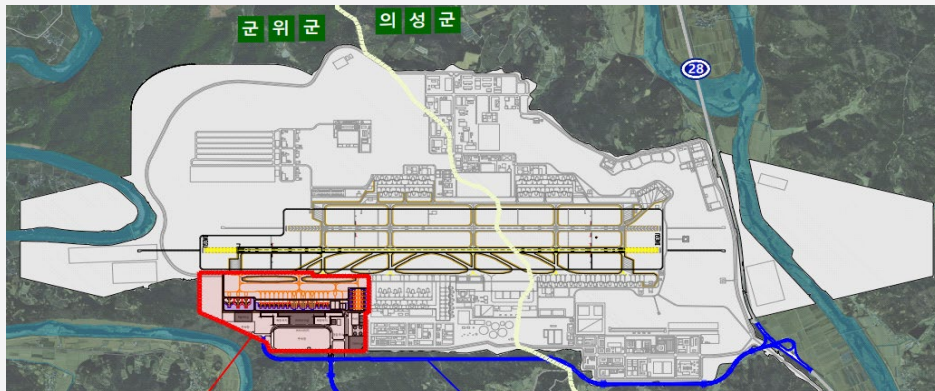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 확충
- (군공항) 16.9㎢(511만평) 부지, Airside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비행대대등, Landside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작전·방호·정비·생활·복지시설 등 조성
- (민항) 92만㎡(28만평) 부지에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60년기준), 화물 21.8만톤 처리가 가능한 공항 건설(추정사업비 2.6조원, B/C 1.03)

* 여객터미널 10만㎡, 화물터미널 1만㎡, 계류장 30만㎡, 주차장 10만㎡(약 3천면), 민항수요를 고려한 활주로 연장, 접근교통시설(도로 2개소 11.2km) 등 반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시설 계획 >



구분	現 대구공항		비고
	규모	비고	
· 부지면적	753만㎡(228만평)		
- 민간공항	17만㎡(5만평)		
· 수요	여객	467만명('19년)	국제선 260만
	화물	0.3만톤('19년)	
· 터미널	여객	2.7만㎡	→
	화물	844㎡	
· 계류장	5.1만㎡	동시주기능력 11대	
· 활주로	L = 2,755m(1本)		
	L = 2,743m(1本)		

통합신공항		비고
규모	비고	
1,782만㎡(540만평)		
92만㎡(28만평)		
1,226만명('60년)		국제선 906만
21.8만톤('60년)		-
10.2만㎡		(3.8배)
1.0만㎡		(11.9배)
29.6만㎡		동시주기능력 26대
L = 3,500m(1本)		
L = 2,744m(1本)		

②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 강화

- 대구경북신공항까지의 접근성 향상 및 서울↔부산간 거리 단축

* (대구 동남권↔신공항) 거리 13km 단축 (시간 15분 단축) / (서울↔부산) 거리 10km 단축 (시간 13분 단축)

-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균형발전에 기여

③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점적 육성

-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④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및 문화예술허브 조성

- 대구 시내의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 지원 계획
- 대구를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대선 공약사항인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을 조속히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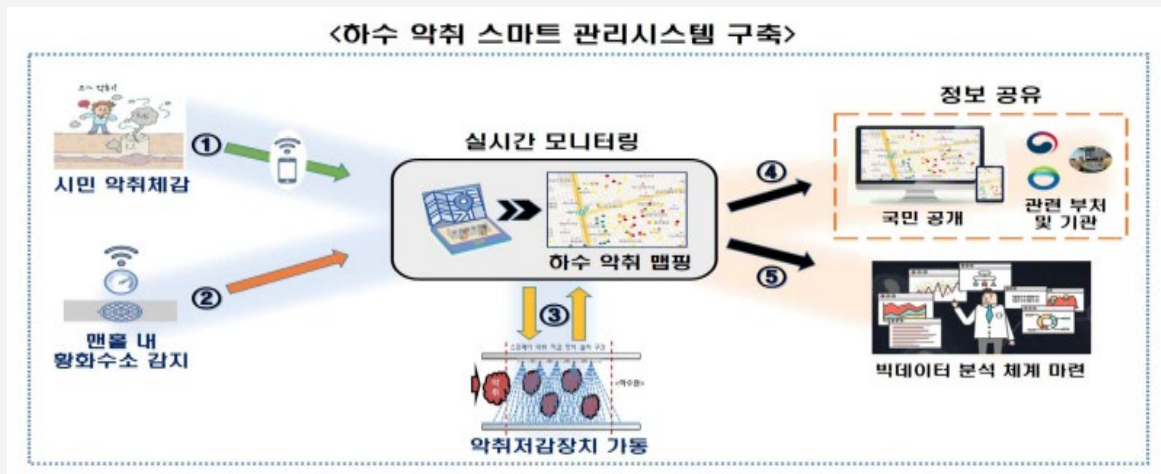
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명문 의대들의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

⑥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먼저 1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노후시설 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에 우선 시행

⑦ 대구 서·북부 악취문제 해소

- (1단계) ICT 기반 실시간 악취자료 수집 및 분석·예측 체계 구축(5개소)
- (2단계) 하수 악취 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악취 관리- 실시간 맨홀 내 악취(황화수소) 측정을 통한 데이터 축적, 분석으로 악취발생구간의 악취저감장치 연계 가동



정부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4-03-05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됨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그리고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❶ 청년생활 걱정해소, ❷ 청년정책 기반 확대, ❸ 체계적인 자산형성, ❹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❶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 발표

-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現100만 명→150만 명까지 대폭 확대
-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생 선발 작년 12만 명→내년 20만 명 지원
- 주거장학금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

❷ 청년도약계좌 가입 범위 확대 및 중도해지 요건 완화

-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 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허용

❸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으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

❹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장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❺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
-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개선

< 청년정책 추진계획 >

청년생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서비스 제공·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대학생 기숙사비 결제 다양
기반확대	▶정부·지자체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체계 구축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가입·중도해지 요건 완화 ▶군장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일시납입 허용 ▶청년도약계좌와 창업 및 주택마련 연계 강화
취업지원	▶15만명 재학생 고용서비스 제공 ▶10만개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 해외교류 확대 ▶청년친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부부처 합동
(국토부,해수부)제1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2024-03-07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비전

글로벌 국가 경제영토 확장

목표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 (항공) 글로벌 TOP5 항공강국; 30년 국제여객 1.3억명
- ▶ (해운·항만) 글로벌 TOP4 해운강국; 30년 항만하역능력 16억톤
- ▶ (물류) 글로벌 TOP10 물류강국; 30년 전국 24시간 내 배송

추진 과제



항공

- ①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 ②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③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新항공 생태계 구축
- ④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해운
항만

- ①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 ②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 ③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 ④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물류

-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②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③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연내 완료, 배후에 첨단복합 항공단지 조성

-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 철저히 관리

② 인천 신항, 완전 자동화 및 배후단지 내 수출 특화공간 조성

-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전환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 상반기 착수

③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 및 경인선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인천 원도심 대개조

-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본격 추진
-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

④ GTX-B·D·E, 인천발 KTX 등 초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 마련
-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 적극 추진
-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XasS 선도 프로젝트 신규 추진

- SW 융합 서비스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 20개, 개발과제 4개 공모
- SW 전문기업·수요기관 컨소시엄의 XaaS 개발에 최대 14억원 지원

2024-0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힘

* XaaS(X(산업)+as a service) :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as a service)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각 산업과 新SW융합을 통한 全산업의 디지털서비스화

국가 XaaS(X:산업 + as a Service) 선도 모델 창출('24~'27년)



동 사업은 전(全)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 SW기업은 내재화된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와 잠재 수요의 빠른 활용·촉진을 위한 개발과제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기획 과제에 20억(20개 과제 × 과제당 1억), 개발 과제에 56억(4개 과제×과제 당 14억)을 투입하여 총 76억 규모로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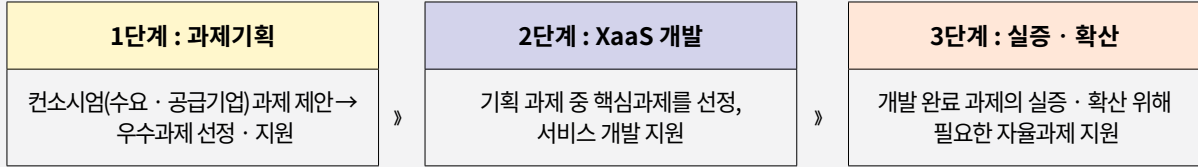
① XaaS 선도 프로젝트 기획(20개 내외×1억 이내)

-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발굴을 위해 과제 당 최대 1억원 이내, 20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분석, XaaS 모델 설계, SW기능 도출, 사업화 전략 등 XaaS 서비스 기획을 지원

②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4개 내외×14억 이내)

- 제조, 의료, 물류 등 주요 산업 내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 개발 및 수요기업의 시범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 당 최대 14억원 이내, 4개 컨소시엄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XaaS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생산·학습, SW테스트·품질 검증 등 XaaS 서비스 개발을 지원

'24년도 선정된 기획 및 개발 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후속 지원(① 기획→② 개발→③ 실증·확산)을 통해 XaaS 선도 모델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및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2.28(수) ~ 4.12(금)이며, 사업 공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http://www.msit.go.kr)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http://www.nipa.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문화체육관광부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발표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인 문화 · 예술 · 스포츠
· 관광산업 환경 만든다

2024-03-04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함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임

비전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

기본 방향

추진과제

1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2

수출 및
투자 창출

3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4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5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1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2 ▶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3 ▶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4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제도화

1 ▶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

2 ▶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

3 ▶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1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2 ▶ 골프장 규제 개선

3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4 ▶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 완화

5 ▶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

1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

2 ▶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3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

4 ▶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

1 ▶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2 ▶ 저작권 등록 수수료 국민부담 완화

3 ▶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

4 ▶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

문화체육관광부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제시

- 디지털·첨단, 기후·환경, 노동·교육·공동체 3부문에서
7대 아젠더 도출

2024-03-04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 24-02호(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를 발간함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집중해야할 중점 아젠더에 관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해왔음. 본 보고서는 혁신성장그룹이 중장기 국가 성장 비전 ‘첨단 녹색 사회(High Tech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를 제시함

7대 아젠더는 디지털·첨단 부문에서 ① AI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②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기후·환경 부문에서 ③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성 제고, ④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노동·교육·공동체 부문에서 ⑤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 ⑥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적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⑦ 지역균형발전을 도출함

< 7대 혁신성장 아젠더 요약 >

분류	아젠더 제목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High Tech (디지털·첨단)	AI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계류 중인 AI법 보완 및 통과 • AI 안전연구소 설립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한시적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 국가 차원 전략적 목표와 국가전략기술별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복합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고도화
Green (기후·환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 산업부문 전략성 제고	•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 •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Society (노동·교육·공동체)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 : 복지 정책	•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의 설계 • 고용보험 개편 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계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안착 • 지역사회 혁신과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및 기능 다변화
	지역균형발전	• 마을공동체수당 신설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건축자재에 오염물질 방출 확인에 대한 증명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확인에 대한 증명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0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13조제1항제6호, 제14조제2항, 별표 제2호차목, 별표 제2호타목)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다만, 별표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구체화 (제3조의2 신설)

-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 마련 (제34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제34조의3 및 별표 5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5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해당 부지를 대신 분양·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22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요청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가격 조정 근거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요청 절차 마련 (제2조)

-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와 산업단지·공장의 개발·설치·증설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면적, 분양·매각의 요청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매각을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②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가격 조정 근거 마련 (제3조)

-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분양·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에 따른 비용 청구 절차 마련 (제4조)

-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대신 분양·매각하는 경우 분양·매각 광고 비용과 분양·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을 해당 분양·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예정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8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공표의 세부적 사항을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처벌의 경우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액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장제27조의2 신설,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예정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9조제3항제10호, 별표 8 제5호 등)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08 시행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로 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4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05 시행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파생상품거래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 금융기관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외국 금융기관 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니면서, 외국기업 종사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외화증권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이를 매도할 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제7조제4항제5호의3 신설, 제7조제5항제4호가목, 제184조제1항 신설, 제184조제1항 각호 신설)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07. ~03.18.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 (안 제11조제4항)
 - (기존)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 ②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 (안 별표3 위반사항 사)
 - (기존) 1차:2개월, 2차:3개월
 - (변경) 1차:7일, 2차:1개월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mailto:기획재정부_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1, 팩스: 044-215-81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05. ~03.15.
---------	---------------------------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 (안 26조)

-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안 별표5)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http://www.mct.go.kr) (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05.
~04.1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거주무기기간 및 해당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동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무기기간을 5년으로 규정 (안 제60조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무기기간을 최대 5년 적용 중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으로 정함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 (안 별표 3)

- 일반 분양주택은 최대 3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함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 (안 별표 3의2)

- 거주무기기간 경과 전에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매입하는 경우 거주무기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시세차익(「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함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안 제14조)

- 위탁사인 자산관리회사(등록사업자)를 법인이사로 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별도의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허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팩스: 044-201-561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08.
~04.17.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자와 입주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 (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 시·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②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 (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리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③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 (안 제53조의2제2항)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협의

④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안 제53조의2제3항)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 1 및 별표 5)

-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tel:044-201-336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05.
~04.1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안 제23조의4)

-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법 위반 또는 전매 동의 신청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이자,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②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안 제7조, 제12조, 별지 제11호의6서식)

-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팩스: 044-201-5612\)](tel:044-201-332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08.
~03.18.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선정 업무대행 근거 마련 (안 제50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임차인이 비아파트 매입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안 제53조)

- 임차인이 가격·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비아파트인 임차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3, 팩스: 044-201-5530)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05.
~04.1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91조의2 신설)

- 평가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②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 기준 마련 (안 제91조의3 신설)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등 혜택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③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안 제91조의4 신설)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평가비용을 부담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④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안 제91조의5 신설)

- 평가기관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전화: 044-200-4308, 팩스: 044-200-4342\)](tel:044-200-43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4.03.05.
~03.25.

공정거래법 개정('24.6.21.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평가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기준·정도 등과 관련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요건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평가위원의 위촉,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③ 평가신청 절차 및 평가비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방식, 등급 보류·미부여 및 등급 조정·무효 사유 등, 등급 유효 기간
-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직권조사 면제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여·반납·재발급 절차 등을 규정
- ⑤ 평가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위임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전화: 044-200-4308, 팩스: 044-200-4342\)](tel:044-200-430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06.
~04.15.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상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①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위임조항 마련 (안 제7조)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직접적 위임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규정을 마련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5조)

-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프라인 기반의 분쟁조정 제도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함
- 회의 참석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소비자정책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 마련 (안 제67조의2)

- 최근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이 개정되어(제81조의2 신설),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계획 통지 의무, 조사 수탁기관 등을 규정함
-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64\)](tel:044-200-440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4.03.05.
~04.15.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 (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 강화 (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 (시행령안 제1항)

② 영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 (안 제176조의6)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tel:02-2100-2688)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05.
~04.15.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 (안 제48조의3)

- 보험계약자 등은 요양기관 명칭, 진료내역,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 청구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청구서류는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이며 안정성 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 (안 제48조의4)

-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요양기관이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규정

③ 전송대행기관 지정 (안 제48조의5)

-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④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48조의6)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tel:02-2100-2962)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1인)

2024-03-05 발의

2022년 12월부터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성범죄 · 성폭력 ·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피공탁자)의 의사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부의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일부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등 11인)

2024-03-07 발의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0인)

2024-03-07 발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국가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는 각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연구자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처음 마련한 계획에 따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원의 중단 또는 감소로 기존 연구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배분·조정 내역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2조의2제5항 및 제8항),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 사유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심의 결과의 반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대비할 장치가 부족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제8항),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등 12인)

2024-03-07 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록 척박해지는 국내 연구환경으로 인하여 이공계 인재의 해외로의 두뇌 유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숫자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4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었음

특히,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구환경과 지원의 편차도 지도교수의 성향 및 연구실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바 있음

반면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4인)

2024-03-07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5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4인)

2024-02-28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5조제5항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희의원 등 13인)

2024-03-07 발의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스포츠계의 신고자·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1의3 신설)**
- ②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함 (안 제12조제1항 단서)
- ③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 ④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 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안 제18조의16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함 (안 제22조제1항제11의4, 제11의5 및 제11의6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2024-03-05 발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4-03-07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계·조선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13(수) 15:30	폴리뉴스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	정우택·김영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3/14(목) 14:00	(기후행동 확산의 해)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출범식	김학용 의원실, SDX재단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3/13(수)	「이달의 입법민원」(2024. 2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3/13(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2호)」 발간		
	3/11(월)	「THE 현안」 2024-3호 발간 -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국회도서관	
	3/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0호(2024-2호) 발간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3/13(수)	「금주의 서평」 제669호(2024-10호) 발간 - 도서명 :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 저자 : 가와우치 아리오		
	3/13(수)	「Data & Law」 2024-1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3/14(목)	「현안, 외국에선?」 제78호(2024-6호) 발간 -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3/13(수) 14:00	최근 담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06호
	3/11(월) 16:00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제8차 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
	3/12(화) 15:00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6(수)	「금주의 서평」 제668호(2024-9호) 발간 - 도서명 : 전세지옥 - 저자 : 최지수	국회도서관	
	3/6(수)	「World&Law」 제2024-5호 발간 - 육아기 단축근무, 눈치 안보고 쓰려면?		
	3/7(목)	「현안, 외국에선?」 제77호(2024-5호) 발간 -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3/5(화) 14:00	2024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전망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3/5(화)	「이슈와논점」 제2206호 발간 -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3/5(화)	「이슈와논점」 제2207호 발간 -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 특허법리 분석을 통한 가능성 검토		
	3/7(목)	「이슈와논점」 제2208호 발간 -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3/8(금)	「이슈와논점」 제2209호 발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		
	3/8(금)	「이슈와논점」 제2210호 발간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3/4(월)	「Futures Brief」 제24-02호 발간 -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04~03.1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5(화)	소송	수허가자의 기부채납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3/5(화)	기업지배구조	주주행동 플랫폼 시대 : 주주권 행사 혁신과 경영진의 대응 전략
3/6(수)	통상관세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집행(관세 회피 조사) 강화
3/8(금)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 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8(금)	지적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드 ‘마크 곤잘레스’의 창작 도안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은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